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임원 공개모집 재공고(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제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선도해 나갈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많은 분들의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2월 20일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직위 및 주요직무

구분	인원	직무내용	비고
이사	10	•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등	비상근
감사	1	• 진흥원의 재산상황 및 업무 감사,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 등	비상근
합계	11		

※ 각 직위에 대한 상세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은 <별표> 참조

2. 임기: 임명일로부터 3년

3. 보수

○ 비상근 이사 및 감사: 보수 없음(내부 규정에 의거 수당 등 지급 가능)

4. 응모자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등) 및 진흥원 「정관」 제8조(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자격증 취득 기준 및 경력 합산 기준: 공고일 전일 취득분까지

직위	자격요건
이사	• 영상·문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진흥원 운영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에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감사	• 재무회계 분야 및 감사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원의 자격제한(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제8조(임원의 자격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이사 및 감사	① 지원서 1부 (※지정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지정서식)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지정서식) ④ 결격사유 확인서 1부 (※지정서식) ⑤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⑥ 자격증 각 1부 (※감사 필수, 이외 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⑦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⑧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각 1부

※ 원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가 모두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추후 제출 및 보완 불가

※ 지정서식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

「알림마당 > 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3.12.20.(수) ~ 2023.12.27(수)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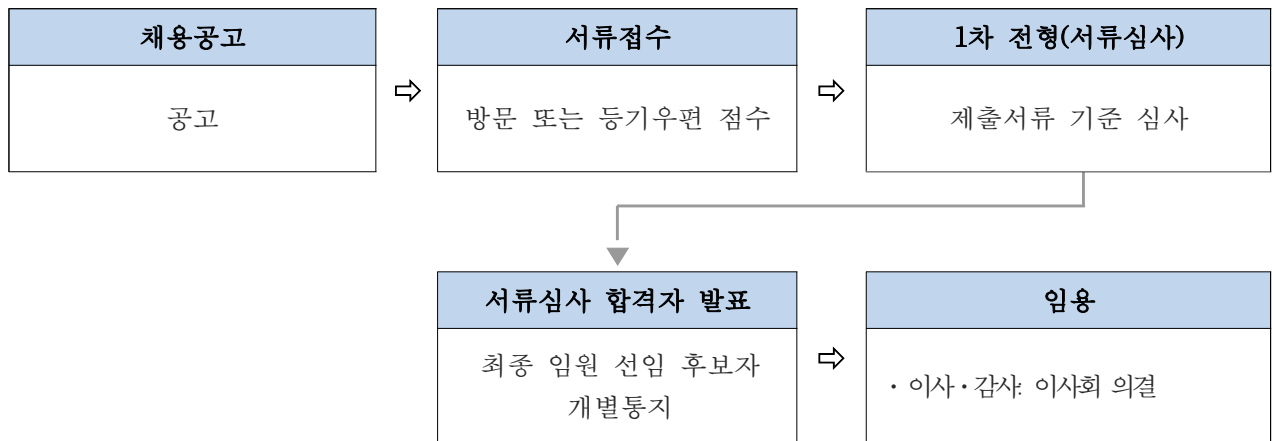
※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 임원추천위원회 담당

- (632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2층 경영지원팀(064-735-0602)

7. 심사방법 및 임원 선임 후보자 결정

○ 전형 절차



○ 전형별 합격배수

구분	1차 전형(서류심사)	2차 전형(면접심사)	최종합격
이사	선발예정인원 2배수	-	선발예정인원
감사	선발예정인원 2배수	-	선발예정인원

※ 서류전형 합격기준: 심사위원 점수 산술평균 70점 이상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 전형별 합격자 선정기준

- 1차 전형(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심사기준>

· 이사 : 전문성, 리더십, 윤리관, 조직친화력 · 감사 : 전문성, 윤리관, 조직친화력

-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 최종 임원 선임 후보자: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8. 기타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지방 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시스템(클린아이 잡플러스)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이며 수시 확인 바랍니다.

- 지원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등 서류 작성 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공고 전일까지 취득 사항이어야 하며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자 등은 모든 전형단계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접수마감 이후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자격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번역문 미제출 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한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전형을 진행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 064-735-0602, 06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임원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제7조 제4항 관련)

직위명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이사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이사: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진흥원 내·외 집단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
- 대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행정부처 및 타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고객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고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와 상호 동반자적 관계 유지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
- 장기적·안정적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 외부환경의 변화 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추구
- 창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도민) 만족 도출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이사회 출석 및 의결사항 심의·의결
- 정관 제16조(기능)에 명시된 진흥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각종 심의사항 심의·의결
-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마. 기타 관련 업무

- 조직의 변화와 혁신 주도,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정보시스템 구축,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및 조직의 재정비 등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영상·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정관 제7조)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조직의 경영경험 및 위기관리능력과 대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
- 청렴성과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 개혁성, 리더십, 기업가적 능력, 전문성,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비전 제시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청렴도, 도덕성, 준법성 등
- 학력 및 전공분야: 제한 없음
- 경력: 규정 내 임원의 직위별 자격요건 참고
-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영상·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정관 제7조)
 - 국내외 경제 및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

직위명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감사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감사: 진흥원의 재산상황 및 업무 감사,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할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의 감사 직무 수행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진흥원 내·외 집단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
- 대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행정부처 및 타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고객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고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와 상호 동반자적 관계 유지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
- 장기적·안정적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 외부환경의 변화 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추구
- 창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도민) 만족 도출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진흥원의 재산상황 및 업무 감사, 이사회 운영 감사
-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의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
-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 요구
- 이사회 출석 및 의결사항 심의·의결, 의사록 기명날인

마. 기타 관련 업무

- 조직의 변화와 혁신 주도,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정보시스템 구축,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및 조직의 재정비 등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정관 제7조)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진흥원 업무에 대한 이해력
- 감사업무 수행의 역량 및 경영여건 분석과 대안 제시 역량
- 청렴성과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 개혁성, 리더십, 기업가적 능력, 전문성,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비전 제시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청렴도, 도덕성, 준법성 등
- 학력 및 전공분야: 제한 없음
- 경력: 규정 내 임원의 직위별 자격요건 참고
-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정관 제7조)
 - 국내외 경제 및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